

# 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방역수칙 변경 안내

(’22.4.22. 중수본 요양시설 대응팀)

## □ 추진배경

-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(’21.11.18~)에 따른 현장 민원 증가,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안,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수칙 일부 완화

## □ 주요내용

### ①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

- (대상)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

※ 단,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

####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

<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>

연령 기준	미 확진자		기 확진자	
	입소자	면회객	입소자	면회객
18세 이상	4차 접종	3차 이상 접종	2차 이상 접종	
17세 이하	해당 없음	2차 이상 접종		

####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(해제 후 3일 ~90일 내\*)

\*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

※ 예: 면회일이 4.30 일인 경우, 1.30-4.27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

- (기간) ’22.4.30(토)~5.22(일), 한시적 적용
- (수칙) 면회객, 입소자,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,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,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

\* 상호 동의를 한 경우,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

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,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

\* 시설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,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(붙임 참고)

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,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, 손 소독,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

•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하고 음성 확인, 일반 신속항원검사(RAT)로 현장 확인도 가능(면회객이 자가 검사 키트 지참)

※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

• 마스크(KF94, N95) 착용 + 발열 체크 +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

•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, 음성확인서(SNS, 문자 통지서 등) 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

③ 면회 시,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·음료 섭취는 불가

\*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

④ 면회 후,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

## 2 기존 입소자 PCR 검사 폐지

○ (주요내용) 기존 입소자의 PCR 선제검사 폐지

\* (기존) 미접종 입소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 실시

○ (적용시기) '22.4.25(월)~

※ 종사자(주 2회 PCR + 주 2회 RAT)와 신규 입소자(2회 PCR 검사 + 4일 격리) 선제검사는 현행 유지

### ③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(주야간보호센터)

- (주요내용) 이용자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야간보호 센터에 한해 '외부강사'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 허용
  - \* 요양시설 등 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, 시설 내 생활을 하는 입소자의 감염원 노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외부강사 프로그램 제공 제한 유지
- (적용시기) '22.5.2(월)~
- (수칙) 외부강사, 입소자, 시설의 상호 동의, 방역수칙 준수
  - \*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(미 확진자 3차 이상, 기 확진자 2차 이상) 을 충족하여야 함
- ① 프로그램은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, 실시 이전에 외부 강사의 발열 여부 확인,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

· 외부강사는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, 일반 신속항원검사(RAT)로 현장 확인도 가능 (외부강사가 자가검사 키트 지참)

※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

· 마스크(KF94, N95) 착용 + 발열 체크 + 손 소독 후 프로그램 진행

- ② 프로그램 진행 시,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·음료 섭취는 불가
- ③ 마스크 착용, 프로그램 전후 환기·소독 실시,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 실시

### □ 기타사항

- '한시 대면 접촉면회', '기존 입소자 PCR 검사 폐지', '외부강사 프로그램' 주요 내용 이외의 상황은 현행 대응지침 준수
  - \* 코로나-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(10판)

**□ 면회대상**

-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

※ 단,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

-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

<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>

연령 기준	미 확진자		기 확진자	
	입소자	면회객	입소자	면회객
18세 이상	4차 접종	3차 이상 접종	2차 이상 접종	
17세 이하	해당 없음	2차 이상 접종		

-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(해제 후 3일 ~90일 내\*)

< 격리해제일 예시(격리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) >

격리해제 일자	1.29일 이전 (90일 이전)	1.30~4.27	4.28-4.29 (2일 이내)	4.30 (면회일)
면회 가능여부	불가	가능	불가	

- 한시 허용 기간 : '22.4.30(토) ~ 5.22(일)

**□ 사전준비**

- ①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교육 실시

\* 접촉 면회 시 직원을 두는 경우 ①격리해제자 또는 ②4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간 자를 배치 권고

## ② 보호자에게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(문자메시지 등)

### ※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

1.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\*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(면회 당일 현장 확인)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음성은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

\*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

\*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, RAT검사 제외

2. 마스크(KF94, N95)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면회객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

####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

연령 기준	미 확진자		기 확진자	
	입소자	면회객	입소자	면회객
18세 이상	4차 접종	3차 이상 접종	2차 이상 접종	
17세 이하	해당 없음	2차 이상 접종		

#### ②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 된 경우

3.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\*를 통해 확인합니다

\*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(COOV앱),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

4.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.

\*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 등

5.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, 체온측정,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.

6.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.

7.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.

## ③ 면회장소 마련

- 접촉 면회가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

- 대면 비접촉 면회 공간과 분리하여 확보

#### ④ 방역용품 준비

-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, 마스크 착용 후 출입

\* 손소독제 입구 비치, 손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

- 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 구비

#### 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·관리

- 면회객 발열체크, 인후통·기침 등 호흡기 증상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

### □ 면회 중 준수사항

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

②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

### □ 면회공간 관리

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

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

### □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

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,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

② 면회 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

③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